

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·추가징수 통지서

환수 또는 추가 징수 대상자	명 칭			
	소재지			
반환대상 금액(㉠)		원		
추가징수 금액(㉡)		원		
납부할 금액(㉠+㉡)		원		
반환명령·추가징수 사유			납부방법	[] 일시납부 [] 분할납부

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반환·추가징수를 통지하니,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OO 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·출장소

장) 직인

※ 행정심판·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